■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구조전문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심의일자	2023. 7. 3. ~ 7. 10.

건축종별	[ ]신축, [○]증축, [ ]대수선, [ ]기타
건축주	현대○○○○

대지현황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지번 : 1-2번지	관련지번 : 1-3 외 88필지	
	대지면적 : 743,273㎡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미포국국산업단지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 330,852.21㎡	건폐율 : 44.51%	층수 지하 : 1층 / 지상 : 5층
	주용도 : 공장	구조 : 일반철골구조	세대수(호)/동수 : 세대 / 8동
	최고높이 : 31m	용적률 : 59.665%	연면적 : 443,433.37㎡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종합의견	1. 차체공장의 접합부 설계검토가 누락되어 있음. 검토서 첨부 바람 2. SD600 철근의 항복강도를 550MPa로 적용하여 검토하였는데, 해당 공칭강도인 600MPa를 적용하여 재검토 바람. 만일 기준에서 요구하는 철근 간격 등의 이유로 550MPa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550MP를 적용하여 설계한 부재가 콘크리트 압괴시점에서 항복하는지 여부를 변형률 적합법에 기반하여 검토되어야 함. 3. 철근 재료강도(SD600)에 적합하게 횡방향철근지수를 적용하여 배근의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 4. 설계스펙트럼 작성시 기반암의 깊이 적용을 재검토하고, 근사고유주기 산정시 가타골조를 적용할 것 5. H형강의 강종은 SHN275를 적용하고 기타 용접 접합이 불필요한 부재에만 SS275를 적용할 것 6. 기초 전단검토시 철근강도는 구조개요에 명기된 600MPa를 적용 재검토하거나, 구조개요 상 기초용 철근강도를 500PMa로 변경할 것 7. 기초철근배근은 최소간격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할 것 8. KDS 41 17 0항을 적용할 것 - 부지응답해석보고서 상 80%이상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9. 차체공장 2~3층 데크 슬라브 구간이 20m 장스판으로 계획되어 처짐, 진동 등의 우려가 있음. 대책 제시 바람. 그리고 20m 스판 Beam이 Main Girder에 접합되는 구간에 슬라브 균열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 제시 바람 10. 2, 3층 Main Girder Splice 구간 길이가 2m 가량되고 상부 덧판 두께가 80mm 가량되므로 이 구간 데크슬라브 시공, 배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재검토 요함 11. 기초 Rotary Pile 지지력 산정 결과, 연직 지지력 1,000KN/EA로 다소 과다해 보임. Pile 좌굴을 고려한 지지력 산정 재검토 요함 12. 차체 공장 1층 바닥 구조 설계시 기둥 반력뿐아니라 여러 중량물의 장비 하중이 혼재하므로 보다 상세한 구조 검토 결과 제시 바람 13. 차체공장 : X방향 풍하중 변위를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측면가새를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14. 차체공장 : 가새를 계획하였으므로 내진 검토시 기본 진동주기 산정은 0.0488hn^0.75로 반영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15. 차체공장 : 데크슬래브로 계획된 단순보 모델된 철골보에 대한 시공중 강도의 안정성 검토가 누락되었으니 추가하기 바람 16. 차체공장 : 스터드 볼트 표기도 재검토해서 불분명한 것은 수정 17. 차체공장 : 구조계산에서 적용된 J형 앵커를 구조도면에서 명기하여 시공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바람 18. 차체공장 : 가새에 대한 구조계산 근거를 첨부하기 바람 19. 도장공장, 의장공장에 대해서도 차체공장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바람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